

1. 개정이유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원의 보호·관리와 상수원 상류 거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폐수가 발생하지 않아 상수원에 영향이 적은 업종의 입지를 추가 허용하고 폐수 차단·집수시설 설치의무도 면제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제14조3 제1호 및 제2호의 공장설립승인지역에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공장은 인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차단·집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정함(안 제3조의제1호나목 및 제3조의제2호 나목 단서 신설)

나. 시행령 제14조의3 제2호에 따른 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할 수 있는 공장의 업종(곡물제분업, 기타 곡물 가공품 제조업,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추가함(안 별표2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공장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공장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제2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공장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장설립승인지역에서 영위할 수 있는 제조업의 범위(제2조의2제2호 관련)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비 고
곡물 도정업	10611	도정시설의 동력이 52.5kW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곡물제분업	10612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고, 제분시설의 용적이 3m ³ 미만이며 동력이 7.5kW 미만이고, 포장처리능력이 시간당 100kg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기타 곡물 가공품 제조업	10619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물과 액상첨가물의 사용이 없는 빵튀기를 제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떡류 제조업	10711	폐식용유를 유출하지 않고 전량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빵류 제조업	10712	폐식용유를 유출하지 않고 전량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코코아 제품 및 과자류 제조업	10713	폐식용유를 유출하지 않고 전량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10730	스프 등 첨가물을 제조하지 않고, 면류(라면은 제외한다)를 제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장류 제조업	10743	산분해 제조공정은 제외한다.
커피 가공업	10791	제조과정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는 볶은 커피, 분쇄 커피 제조공장만 해당한다.
차류 가공업	10792	건조된 상태의 차류를 생산하거나 단순 소분 또는 포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삼제품 제조업	10795	1차 가공된 홍삼을 이용하여 농축 또는 추출 등 2차 가공하는 경우 또는 농축된 인삼액을 단순 희석하여 포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6299	물리적, 화학적 처리공정이 없는 단순 조립인 경우만 해당한다.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33910	세척 및 도장 등의 작업이 없고, 간판을 제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준수사항)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공장을 설립한 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제3조(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준수사항) ----- ----- ----- -----.
1. 영 제14조의3제1호의 지역가. (생략)	1. ----- 가. (현행과 같음)
나. 오염사고에 대비하여 오수 및 폐수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는 시설 및 집수시설(集水施設)을 설치할 것 <단서 신설>	나. ----- ----- ----- -----. <u>다만,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공장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공장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다. (생략)	다. (현행과 같음)
2. 영 제14조의3제2호의 지역가. (생략)	2. ----- 가. (현행과 같음)
나. 오염사고에 대비하여 오수 및 폐수의 외부유출을 차단하는 시설 및 집수시설을 설치할 것 <단서 신	나. ----- ----- ----- ----- . 다만, 시장

<u>설></u> 다. (생 략)	<u>· 군수 · 구청장이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공장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u> 다. (현행과 같음)
------------------------------	---